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회사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회장 또는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특별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첫째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특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분기별 정기 이사회(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정기 또는 특별이사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월 전, 특별이사회인 경우에는 2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는 의사의 안전 및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세부사항, 설명자료를 포함하여 영문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다른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 경우에 해당 조치는 출석이사 단순 과반수의 이사회 보통결의에 의함)를 제외하고는 정관 부록 A에 명시된 사안에 대한 결의는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전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설정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3) 주식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 감사위원의 보수
-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2) 공동대표의 결정
- (3)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4) 신주의 발행
- (5) 사채의 모집
- (6) 준비금의 자본전입
- (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8) 이사의 경영, 회사 기회유용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9) **중간배당**
- (10) 해외증권의 발행
- (1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1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 (13)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의결 사항에 대한 재결의
- (14)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17)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18)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3. 정관 38조제2항에 따라 정관 부록 A에 명시된 이사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사

안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의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경영진)

- ① 회사는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 ②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경영진은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회장, 사장 및 경영진 중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라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

-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정한다.
- 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 될 수 있다.
- ⑥ 경영진의 급여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④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국문과 영문으로 각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